

##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명칭(상호)	
	대표자 성명	
	주소	

대행업무의 범위	
----------	--

「해사안전법」 제4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 : 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해사안전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.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1부 4. 정관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5.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### 처리절차

